

## 생활인구의 산정방식 및 도시정책 활용을 위한 이슈 고찰\*

Consideration of issues for calculating de facto population and utilizing urban policies

이삼수\*\* 윤병훈\*\*\* 이미홍\*\*\*\* 권영환\*\*\*\*\*  
Lee, Sam-Su Yun, Byung-Hun Lee, Mi-Hong Kwon, Young-Hwan

---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direction for the future utilization of de facto population in urban policies through the analysis of de facto population-related concepts and polic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e facto population can be used as an alternative to traditional population policies to measure the vitality of a city. Second, there is limited evidence to suggest that the increase in de facto population contributes to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ies in depopulation areas. Third, in order to utilize the de facto population for urban policy, it is necessary to shift from the settled population to the service population concept. In the future, we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nd explore ways to apply it to all local governments, not just those with declining populations.

.....  
색인어 : 생활인구, 관계인구, 인구감소지역, 도시정책, 통신빅데이터

Keywords : De Facto Population, Relationship Population, Depopulation Area. Urban Policy, Telecommunication Big-data

---

---

\* 이 연구는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수행한 “도시 및 지역계획의 실현성 제고를 위한 생활인구 개념의 적용 방안 연구” 결과의 일부임

\*\*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주저자/교신저자: l3water@lh.or.kr)

\*\*\*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저자: civilurban@lh.or.kr)

\*\*\*\*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저자: mihong@lh.or.kr)

\*\*\*\*\* LH 토지주택연구원 주임연구원 (공동저자: kwon3614@lh.or.kr)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저출산·고령화, 전통 제조업 쇠퇴로 인한 경제 침체, 일자리 감소로 인한 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인구감소 및 산업유출, 그리고 빈집증가 등 도시쇠퇴를 넘어 지역소멸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하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75개, 2018년 89개, 2019년 97개, 그리고 2022년에는 113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2월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2021)는 89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인구대책은 크게 적응정책과 극복정책으로 구분되나 대부분이 소극적인 적응정책이며, 지역의 인구유입 등 적극적인 극복정책은 그다지 많지 않다(이소영·김도형, 2021). 또한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내총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최태림·최명섭, 2021), 인구감소에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이 겪고 있는 인구감소의 문제는 단순히 정주인구의 감소보다 사회적 인구 유출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박경진·김상민, 2017).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하혜영·류영아, 2022), 2022년에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생활인구’의 개념의 도입은 기존의 정주인구 기반의 인구관리 정책에서 체류인구까지 고려한 새로운 정책으로의 전환이다.

하지만 기존의 인구 개념은 주민등록인구,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센서스 인구), 계획인구 등 도시정책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 지방도시에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의 적용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는 단순히 ‘생활인구’의 개념만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특정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생활인구의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생활인구 관련 개념 및 정책 등의 분석을 통하여 생활인구 산정방식 및 정책 활용상의 이슈를 도출하여 향후 생활인구가 도시정책에서 활용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먼저 생활인구 관련 개념 및 해외 유사사례, 그리고 현재 국내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정리한다. 이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상 생활인구의 산정방식을 소개하고, 생활인구의 개념을 도시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생활인구 산정방법 및 정책 활용상의 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코로나19 이후 변화 양상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손수민·남진, 2022).

생활인구의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 인구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자료구득이 가능하며, 체류인구는 SKT 통신 빅데이터(서비스인구)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체류인구 산정을 위한 SKT 서비스인구 빅데이터는 시간대별(0~23시), 성별(남, 여), 연령대별(5세단위), 월별, 주중/주말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체류인구의 산정은 월별로 전체 성별 및 연령대별 합산, 주중/주말 및 시간대별 평균값으로 산정하였으며, 월별 체류인구를 산출하여 1일 평균 체류인구를 산출하였다. 주거인구(상주인구)는 00시부터 06시 사이 같은 행정동에 50% 이상 체류하는 인구이며, 직장인구는 09시부터 18시 사이 같은 행정동에 30% 이상 체류하는 인구이며, 방문인구는 주거인구 및 직장인구가 아닌 순수 방문인구로 구분하고 있다.

표 1. SKT 서비스인구 데이터 설명자료

No.	컬럼ID	컬럼명	타입	길이	NULL
1	hh	시간	VARCHAR2	2	N
2	gender	성별	VARCHAR2	2	N
3	age	연령	VARCHAR2	4	N
4	block_code	소지역코드	VARCHAR2	20	N
5	centroidx	X좌표	NUMBER	(38, 8)	N
6	centroidy	Y좌표	NUMBER	(38, 8)	N
7	h_pop	주거인구	NUMBER	(18, 2)	체류인구로 산정
8	w_pop	직장인구	NUMBER	(18, 2)	
9	v_pop	방문인구	NUMBER	(18, 2)	

출처: SKT 내부자료

## II. 선행연구 및 생활인구 관련 개념 정리

### 1. 생활인구의 도입배경 및 개념

#### 1) 생활인구의 도입배경

지금까지 상주인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인구규모를 파악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교통 등의 발달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공공서

비스 공급의 비용·편익간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하혜영·류영화, 2022). 따라서 기존의 주민등록인구 뿐만 아니라 유동인구와 체류인구까지 포함한 새로운 인구 개념의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김동영 외, 2020).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인구정책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신원득, 2012). 이러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생활인구의 개념 및 확대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다.

생활인구, 즉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된 인구개념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전대욱 외, 2021). 즉, 주민등록인구인 정주인구 차원의 인구정책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출산정책이나 인구유입 정책에 국한되었으며, 그 성과 또한 미미하였다. 따라서 생활인구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였다(전대욱 외, 2021). 또한 주민의 개념을 거주자에서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등 직간접적인 주민참여의 폭넓은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전대욱 외, 2021).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인구감소지역내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확대 정책으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한 지원시책은 크게 ① 보육·교육·보건·의료·안전·교통·주거·복지·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② 통근·통학, 관광·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 지역체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그리고 ③ 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사업,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지원사업, 복지 및 편의 시설 등의 설치사업, 재난·재해 및 범죄예방사업, 경관 및 환경개선 사업 등이 있다.

## 2) 생활인구의 개념

기존 연구에서는 관계인구에 대한 소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부터 시행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생활인구’의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법률 제2조 2항에서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주민등록인구),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외국인인구)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구로 정리할 수 있다.

체류인구의 개념은 법률에서는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안소연 외(2023)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특정지역에서 1박 이상 머무르는 인구로서 1박 이상이라는 시간축을 적용한 개념으로 다소 차이를 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2020)는 방문인구를 일상생활권(거주, 통근, 통학 등)을 벗어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한 장소(분석대상 공간)에 일정시간이상 체류한 사람으로 정의하며, 일상시간 이상이라 함은 해당 지자체 내, 특정 기지국에 30분 이상 체류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의 유동인구는 타지역에서 2시간이상 머물던 사람이 해당지역으로 이동하여 2시간이상 머문 경우로 보고 있다. 따라서 체류인구는 하루라도 머무르지 않는 단순한 방문인구 개념보다는 시간개념을 도입하여 월 1회(3시간 이상) 또는 1박 이상을 그 지역에서 머무르는 인구라고 볼 수 있다.

표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의 개념

생활인구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인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체류횟수가 월 1회(3시간) 이상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2. 생활인구 관련 유사개념

생활인구의 유사개념으로는 주간인구, 서울·제주 생활인구, 서비스인구, 체류인구, 관계인구 등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 주간인구는 해당 지역의 상주인구(야간인구)에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통근·통학인구를 더하고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통근·통학인구를 뺀 인구를 의미한다. 해당지역에 주간에만 활동(통근, 통학)하는 인구로서 상주인구(야간인구)와는 시간적으로 대칭되는 개념의 인구이다. 서울 생활인구는 공간적으로 특정지역, 시간적으로 24시간 생활하는 모든 인구를 말하며, 상주인구와 비상주인구, 방문인구 등 특정지역(서울)의 행정서비스의 수요를 유발하는 모든 인구가 생활인구에 포함된다(전대욱 외, 2021). 체류인구는 관광, 직장, 업무, 교육, 생활서비스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에 방문하여 일정기간 이상 머무르는 인구이며, 단기 및 중장기 체류인구로 구분한다(전대욱 외, 2021). 계획인구는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에서 생활 인프라나 도시계획시설 등의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인구이다.

또한 “관계인구”는 지역으로의 이주 및 관광 체류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과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고 지역에 도움을 주는 인구를 말한다. 지역특산품 구매, 고향사랑기부금 납부, 정기적인 방문, 자원봉사자 등 정주민구 외에 지역과 관계를 맺

고 있는 사람들이다.

표 3. 생활인구 유사용어 및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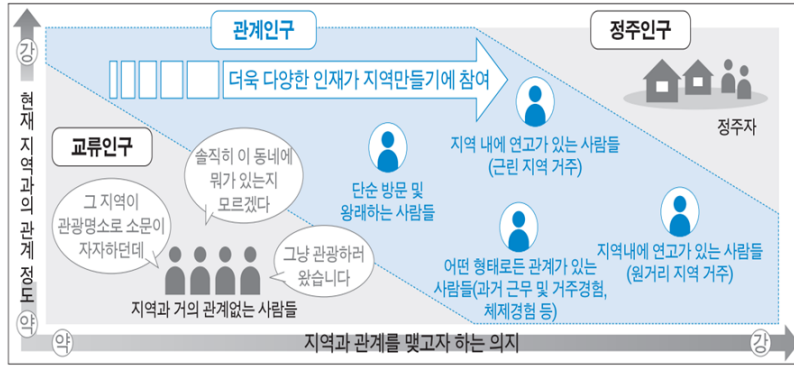
구분	유사 용어	개념
국내	주간인구	해당지역의 상주인구(야간인구)에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통근·통학인구를 더하고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통근·통학인구를 뺀 인구
	서울 생활인구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물론 업무, 관광, 의료, 교육 등 일시적으로 서울을 찾아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인구
	부산 서비스인구	상주인구와 관광, 쇼핑, 의료, 교육 등 일시적으로 부산을 찾아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인구
	제주 생활인구	거주 목적으로 제주지역에 일정시간 이상 체류하는 상주인구와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지역을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유동인구를 합한 인구
	전북 체류인구	관광, 직장, 업무, 교육, 생활서비스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하여 하루 이상 머무르는 인구
	전남 관계인구	해당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지역경제, 지역주민 등과 관계를 맺으며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구
	계획인구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에서 생활인프라나 도시계획시설 등의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인구
국외	일본 관계인구	지역으로의 이주 및 관광 체류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과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고 지역에 도움을 주는 인구

출처: 전대욱 외(2021), 안소현 외(2022) 및 안소현(2023)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일본의 관계인구 개념은 타카하시 히로유키(高橋博之)의 저서 ‘도시와 지방을 섞다 『타베루 통신』의 기적(都市と地方をかきまぜる「食べる通信」の奇跡)(2016)’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그는 관광은 일회적이고 지역의 저력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정주라는 선택은 진입장벽이 높다고 설명하면서, 교류인구와 정주민 사이에서 잠자고 있는 관계인구를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계인구’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이소영·김도형:2021, 류영진:2020). 타카하시(2016)는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지방과 관계를 맺는 수준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도시 거주자들이 많다고 강조하며,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도시 거주자들이 가질 수 있는 ‘다분화된 선택지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사시데 카즈마사(指出一正)는 ‘우리들은 지방에서 행복을 찾는다(ぼくらは地方で幸せを見つける(ソトコト流ローカル再生論, 2016))’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다(이소영·김도형, 2021). 사시데(2016)는 미래의 시대는 관계의 시대라고 선언하고, 관계인구를 말 그대로 지역에 관계를 맺어오는 인구를 뜻하며, 자신이 마음에 드는 지역에 주말마다 방문하거나, 빈번히 들르지는 못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지역을 응원하고자 하는 사람들라고 정의하고 있다(류영진, 2020). 사시데(2016)는 관계인구와 교류인구와의 차이를 교류인구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지역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회적인 기록이나 효과를 가시화(인식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하는 인구라고 설명하고 있다(류영진, 2020).

관계인구가 일본정부의 정책에서 소개된 것은 2018년부터이다. 관계인구는 이주한 「정주민구」도 아니며, 관광으로 온 「교류인구」도 아닌 지역과 다양하게 관계하는 인

구를 지칭한다(일본 총무성). 교류인구, 관계인구, 정주인구는 현재 지역과의 관계 정도 및 지역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출처: 임화진(2022)의 '일본의 관계인구 정책과 청년이 주도하는 지방창생' 및 총무성 홈페이지(soumu.go.jp)

그림 1. 관계인구의 개념 및 정의

또한 일본의 관계인구와 우리나라의 생활인구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생활인구는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월1회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그 지역에 방문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관계인구는 거주인구 및 방문인구(체류인구) 뿐만아니라 비방문하여도 다양한 교류활동을 하는 교류인구까지도 포함하여 그 범위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표 4. 생활인구와 관계인구의 비교

구분	생활인구		관계인구		
	정주인구		체류인구	방문 인구	비방문인구
	주민등록인구	외국인인구			
인구유형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재외동포 국내거소인구	정기적인 체류 및 교류 인구	단순 방문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역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인구
주소지 변경	○	○	×	×	×
목적 및 목적지	3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등록	외국인 등록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	단순 관광, 휴양 등	고향방문 등
기간/빈도	30일 이상	30일 이상	월 1회 3시간 이상 체류	월 1회 3시간 미만 체류	미방문
자료구축 여부	통계청	통계청	통신사 유동인구 (구축가능 여부)		
방문여부	거주		방문		비방문

출처: 안소현 외(2022)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함

### 3. 생활인구 관련 정부정책 검토

생활인구의 개념을 적용한 이유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생활인구의 개념이 도입되었다(신인득, 201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감소지역 내에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으로서 일본의 고향납세, 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2023년) 등이 있다. 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1년 10월 19일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제정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며 연간 기부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주민복지 증진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이 해당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여건, 체류 목적,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7개 시·군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시·군은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이다(행정안전부, 2023). 체류 유형별로는 통근 2개(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통학 1개(경남 거창군), 관광 2개(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기타 2개(군인(강원 철원군), 외국인(전북 고창군)) 지역이다. 2023년 연말까지 7개 시·군의 성별·연령·체류일수 등 다양한 유형별로 생활인구를 산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2024년에는 올해 시범 산정 결과를 보완하여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본격적으로 산정·공표하고, 산정한 생활인구의 활용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행정안전부, 2023).

또한 행정안전부는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고향올래(GO郷 ALL來)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향올래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며, 2023년 8월에 공모 결과를 발표하여 최종 21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지자체 추진 사업 중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 사업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① 두 지역 살아보기, ②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③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④ 청년 복합공간 조성, ⑤ 위케이션, ⑥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자율사업) 등 총 6개 시책으로 구성되었다(행정안전부, 2023.08.10.).

생활인구는 기존의 주민등록인구 개념에서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으로는 매우 의미가 크다.



하지만, 생활인구 자체의 산정보다는 생활인구 개념의 확대 적용을 통한 정책적 효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행정안전부의 생활인구 산정방식을 검토하고 도시정책적 차원의 활용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 Ⅲ. 통신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인구 산정

#### 1. 생활인구의 산정방식 검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의 생활인구(주민등록인구+체류인구+외국인구) 산정방식을 검토하고,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의 다양한 이슈를 검토한다.

표 5. 생활인구 산정방식

구분	생활인구 산정방안
산정대상	• 생활인구
산정 및 산정 대상기간	• 산정주기는 분기별/산정대상 기간은 1개월 단위 기준 (생활인구 00명)
활용데이터	• 민간데이터-통신3사 등의 이동통신데이터 • 주민등록지, 외국인등록지, 거소신고자를 관할하는 시군구 이외의 다른 시군구로의 이동만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주민등록), 법무부(등록외국인, 거소신고자)의 개인식별데이터
산정내용 및 방법	• 기초자치체별 1개월 동안 체류일수별, 체류하는 사람의 수를 산정(시군구, 체류일수, 내·외국인, 성별, 연령별로 구분) - 민간통신데이터에서의 월 1회이상 주민등록지, 외국인등록지, 거소신고자를 관할하는 시군구 이외의 시군구로의 이동, 3시간의 체류시간 기준 적용 -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가명결합하여 주민등록인구,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관할하는 지역 이외의 특정지역을 방문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출처: 안소현(2023) p.5의 내용을 참고하여 일부 수정함

행정안전부는 ‘23년 5월에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생활인구의 요건에서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해당 시·군·구 이외의 시·군·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생활인구의 산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구감소지역 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생활인구의 산정 주기는 1개월로 하고 있다.

1 행정안전부(2023.08.03)는 체류시간 기준을 하루 3시간이상으로 한 근거는 활동별로는 일(3시간1분), 학습(3시간29분), 여가(3시간39분)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 수준(약 3시간)을 고려하였으며(통계청, 2020), 지역별로는 인구감소지역(4시간47분), 관심지역(3시간52분) 방문자는 평균 3~4시간 정도 체류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2022년)

표 6. 지역별 생활인구 및 체류인구 현황(예시)

(단위: 명)

지역	생활인구	인원	성별		연령							
			남	여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강원 고성군	계											
	주민등록인구1)											
	체류인구2)											
	외국인3)											
충북 괴산군	계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											

지역	체류 일수	인원	내·외국인		성별		연령						
			내국인	외국인	남	여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강원 고성군	계												
	1일												
	2일												
	...												
	31일												
충북 괴산군	계												
	1일												
	2일												
	...												
	31일												

주: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한달을 기준으로 측정된 체류일수별 체류한 사람의 수임  
 출처: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www.law.go.kr)

## 2. 생활인구 산정을 위한 통계자료 활용 검토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생활인구의 산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의 통계자료를 활용할 경우 2021년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1,638,809명, 외국인인구는 외국인등록인구 1,093,891명과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인구 475,945명은 더한 1,569,836명이다. 또한 주민등록인구는 읍면동, 외국인등록인구는 시군구,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인구는 시도단위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체류인구는 통계자료가 존재하고 있지 않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생활인구의 산정은 불가능하다.

표 7. 생활인구 산정을 위한 통계자료 활용 여부(2021년)

구분	생활인구 (a+b+c)	주민등록 인구(a)	체류인구 (b)	외국인인구(c)		
				계	외국인 등록인구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인구
통계정보 제공여부	×	○	×		○	○
정보제공범위		읍면동 집계구			시군구	시도

따라서 생활인구 산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체류인구의 산정방법이며, 체류인구를 기존 통계자료로 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통신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SKT 통신빅데이터의 서비스인구(주거인구, 직장인구, 방문인구)를 활용하였다. SKT의 서비스인구에는 주거인구, 직장인구, 방문인구로 구분하고 산정되어 이 자체로 생활인구 개념과 유사하나, 행정안전부의 생활인구 개념을 최대한 활용하기 산정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인구는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체류인구만을 SKT 서비스인구에서 직장인구 및 방문인구로 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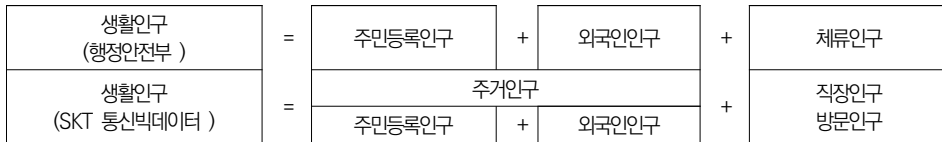


그림 2. 행정안전부 생활인구와 본 연구의 생활인구 산정방법 비교

### 3. 통신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인구 산정

#### 1) 전국 시군구의 생활인구 산정

앞에서 설명한 SKT 통신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도별 체류인구를 산출하여 대략적인 생활인구를 산정하였다. 전국의 체류인구는 11,700,721명으로 산출되어 생활인구는 64,909,366명으로 산정되었으며, 주민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의 비가 1.26으로 외국인인구 및 체류인구가 26% 정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체류인구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22.7%이며, 생활인구 대비 1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일본의 2021년 관계인구 실태파악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인구대비 17.2% 및 지역기준으로 33.8%가 관계인구임을 감안하면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된다.<sup>2</sup>

주민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가 가장 높은 시도는 제주도(1.34) 및 강원도(1.31)로

2 일본 국토교통성은 관계인구 실태파악을 위하여 2020년 9월에 18세 이상의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하였다(유효응답: 148,831명). 모집단 확대 추계하여 일본의 관계인구(방문계)는 약 1,827만명(17.2%), 관계인구(비방문계)는 251만명으로 추산하였으며, 복수지역을 감안하면 33.8%가 관계인구로 추산되고 있다(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総合計画課, 2021).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곳은 세종(1.18) 및 대전(1.23)으로 분석되었다. 특별시 및 광역시에 비해 광역도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비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며, 이는 대도시의 경우 주변지역에서 통근·통학 등의 체류인구의 영향, 그리고 지방의 경우 관광 등의 체류인구의 특징이 반영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8. 생활인구 산정을 위한 통계자료 활용 여부(2021년)

(단위 : 명)

구분	생활인구 (a=b+c+d)	주민등록 인구(b)	체류인구 (c)	외국인인구(d)			a/b	c/b
				계	외국인 등록인구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인구		
전국	64,909,366	51,638,809	11,700,721	1,569,836	1,093,891	475,945	1.26	0.23
서울특별시	12,137,765	9,509,458	2,263,175	365,132	226,569	138,563	1.28	0.24
부산광역시	4,244,210	3,350,380	848,101	45,729	39,420	6,309	1.27	0.25
대구광역시	2,954,990	2,385,412	537,602	31,976	27,230	4,746	1.24	0.23
인천광역시	3,659,882	2,948,375	612,929	98,578	66,364	32,214	1.24	0.21
광주광역시	1,828,633	1,441,611	361,062	25,960	20,934	5,026	1.27	0.25
대전광역시	1,788,721	1,452,251	316,142	20,328	17,292	3,036	1.23	0.22
울산광역시	1,412,357	1,121,592	267,708	23,057	16,827	6,230	1.26	0.24
세종시	438,991	371,895	60,888	6,208	4,884	1,324	1.18	0.16
경기도	16,759,267	13,565,450	2,630,382	563,435	360,412	203,023	1.24	0.19
강원도	2,017,065	1,538,492	457,863	20,710	17,384	3,326	1.31	0.30
충청북도	2,011,266	1,597,427	363,833	50,006	36,045	13,961	1.26	0.23
충청남도	2,703,700	2,119,257	495,378	89,065	62,578	26,487	1.28	0.23
전라북도	2,258,050	1,786,855	437,352	33,843	30,331	3,512	1.26	0.24
전라남도	2,309,806	1,832,803	440,868	36,135	32,656	3,479	1.26	0.24
경상북도	3,326,670	2,626,609	640,240	59,821	51,100	8,721	1.27	0.24
경상남도	4,151,914	3,314,183	761,685	76,046	63,148	12,898	1.25	0.23
제주도	906,079	676,759	205,513	23,807	20,717	3,090	1.34	0.30

## 2) 인구규모별 주민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중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국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의 비는 1.257이며, 인구규모별로 살펴보면 인구규모가 작을 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구 5만 이하의 시군구는 1.304인 반면, 인구 50만 이상은 1.226으로 0.078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생활인구 산정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외국인인구 및 체류인구의 지역적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절대적인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인구규모가 작은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생활인구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될 수 있다.

따라서 생활인구의 도입이 지방중소도시의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한 새로운 인구정책의 역할을 지역의 체류인구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표 9. 인구규모별 생활인구 및 주민등록인구 분석(2021년) (단위 : 개, 명)

인구규모	개수	생활인구(a)	주민등록인구(b)	a/b
전체	250	64,909,366	51,638,809	1.257
5만이하	53	2,335,231	1,790,197	1.304
5만-10만	40	3,641,623	2,807,603	1.297
10만-20만	43	8,160,778	6,319,840	1.291
20만-30만	48	15,008,672	12,017,014	1.249
30만-50만	53	25,559,076	20,768,055	1.231
50-100만	13	9,729,366	7,936,100	1.226

## IV. 생활인구의 산정방식 및 정책 활용상의 이슈 검토

### 1. 생활인구 산정방식의 이슈

#### 1) 생활인구 산정내용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표 5>에서는 생활인구를 이 세가지 인구의 단순 합산값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주민등록인구와 1일 3시간 이상의 체류인구를 같은 비율의 생활인구로 보고 있다.

이는 생활인구의 개념이 주민등록인구 기준이 아닌 실제 거주하는 내외국인 및 통근·통학 및 단순히 방문하는 인구로 확장되어 다소 과대 산정될 개연성이 있다. 즉, 생활인구는 단순히 “주민등록인구+체류인구+외국인”의 합계인지, 아니면 “a\*주민등록인구 + b\*체류인구 + c\*외국인”으로 가중치가 필요한지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주민등록인구(등록인구)와 인구총조사인구(등록센서스)와의 내국인 기준으로 155만명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정책적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아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표 10. 주민등록인구 및 센서스인구 비교(2021년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체 인구	내국인	외국인	출처
등록인구(a)	53,208,645	51,638,809	1,569,836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외국국적통포 거소신고인구
등록센서스(b)	51,738,071	50,088,104	1,649,967	인구주택총조사
a-b	1,470,574	1,550,705	-80,131	

## 2) 체류인구의 체류시간

생활인구의 요건 중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은 시·군·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체류인구의 체류시간은 연속 체류시간이 아닌 총 체류시간으로 연속으로 3시간 체류한 사람과 1시간씩 3번 체류한 사람이 같은 체류인구로 산정된다. 생활인구의 도입 취지인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체류시간 산정이 연속체류시간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체류시간의 총합이 더 합리적일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표 11. 최소 체류시간 단위시간 설정방법

출처	유형	최소 체류시간 단위 설정 방법
한국관광공사	방문객	해당 지자체내 특정 기지국에 30분이상 체류
서울시	생활인구	1시간 단위의 특정시점 적용
SK	유동인구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는 2시간이상, 행정동은 30분 이상 체류
통계청·SK	유동인구	본인이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 타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이상 체류
한국교통연구원	체류인구	주체류지는 3시간 이상, 기타 체류지는 30분이상 시간 적용
전라북도	체류인구	1박이상

출처: 안소현(2023) p.5의 내용을 참고하여 일부 수정함

## 3) 체류인구의 월별/시간대별 변동성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는 계절적 요인이나 주중 또는 주말, 그리고 시간대별 분포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체류인구의 측정시기에 따른 변동성의 고려가 필요하다. 실제 2021년 전국의 생활인구는 2월이 가장 많고, 12월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차는 772만명(11.0%)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12).

표 12. 전국 월별 생활인구 변화(2021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변동값
2021년	63,351	70,357	63,877	65,719	63,713	65,975	63,840	63,604	65,902	63,928	66,684	62,639	7,718 (11.0%)

주민등록인구와 달리 통근·통학 등 체류인구가 시간대별로 다르게 체류할 경우 중복으로 과다 산정될 수 있다. 2021년 2월 생활인구를 보면 세종시는 시간대별 생활인구의 변화가 거의 없으나, 서울 종로구의 경우 업무상업 중심지의 특성으로 주간에 생활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 이는 실제 기반시설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활성화의 측면과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정책적 측면에서 접근방식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생활인구에 기반한 도시계획시설 등의 입지나 규모를

산정할 경우 계절 및 주말 등의 요인의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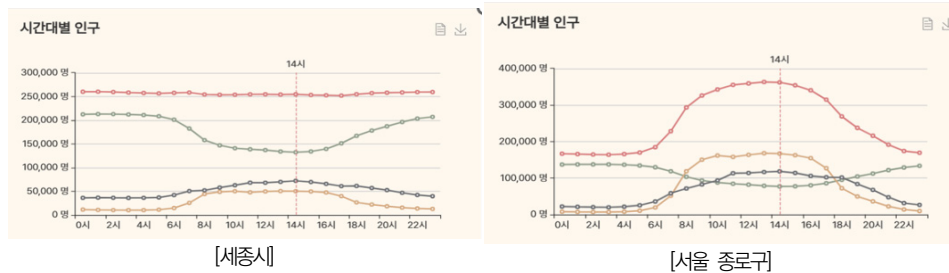


그림 3. 시간대별 생활인구(빨간색) 현황(2021년 2월)

## 2. 생활인구 정책활용상의 이슈

### 1) 생활인구 산정 대상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생활인구의 산정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생활인구를 산정하는 대상지역은 현재 87개 인구감소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밖의 지역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정 대상이 아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고시하는 지역으로 매년 고시 때마다 변경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시군구는 기본적으로 생활인구를 정부차원에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인구를 활용한 전국 시군구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시군구의 생활인구의 생활인구 산정을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 2) 생활인구의 공간단위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생활인구는 시·군·구 단위로 산정할 계획이다. 시·군·구 단위의 생활인구 산정은 국토교통부가 생활인구를 활용한 생활권계획 수립 등의 도시정책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체류인구 산정의 최소공간범위는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생활활동을 하는 공간의 지리적 범위를 의미하며, 기초지자체를 기본단위로 설정한다(안소현, 2023). 기초지자체 내 공간정책과 연계를 위해서는 도시내 적절한 공간범위를 대상으로 생활인구 또는 체류인구의 산정이 필요하다. 즉 도시 및 지역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책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산정을 위한 공간단위 설정 방법론의 개발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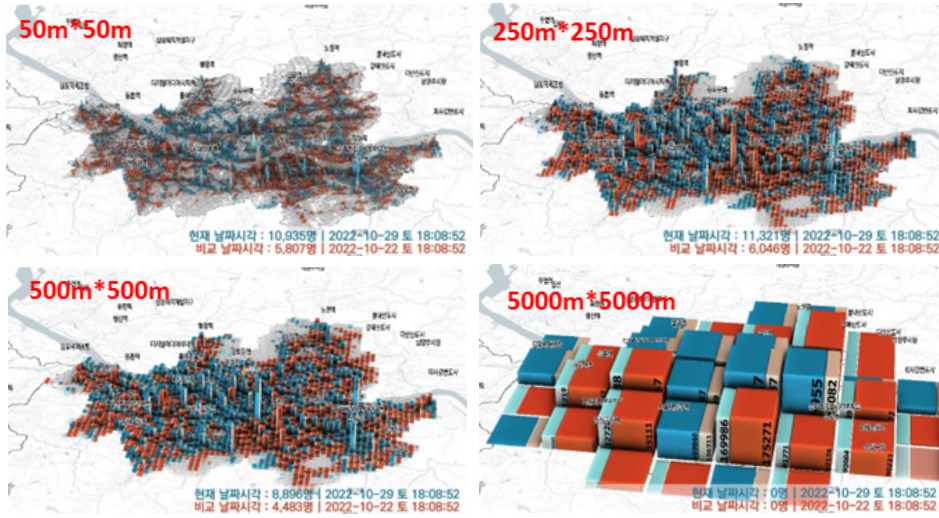


그림 4. 기초지자체내 생활인구 산정의 최소공간 범위 설정

### 3) 생활인구의 유입 및 유출지역 분석

생활인구는 지역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의 산정방법에서는 체류인구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왔는지 등 유입지역을 파악할 수가 없다. 또한 특정 지자체의 주민등록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통근, 통학, 관광 등을 위해 유출지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생활인구를 활용하여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간 연계차원에서의 유입 및 유출지역의 분석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생활인구의 도시정책 활용을 위한 목적에 맞는 생활인구의 개념 정립 및 산정방식(공간범위, 시계열 등)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표 13. 생활인구의 산정방식 및 도시정책 활용을 위한 이슈 도출

구분		주요 이슈내용	비고
산정 방식	생활인구 산정방식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생활인구는 이 세가지 인구를 단순합산한 인구 실제 거주인구와 단순 체류인구를 같은 비율의 생활인구로 산정	거주인구와 체류인구의 동일한 잣대 적용
	생활인구 산정대상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생활인구의 산정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을 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250개 기초지자체 중 89개 지자체만 생활인구 산정
	생활인구의월 별/시간대별 변동성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는 계절적 요인이나 주중 또는 주말 등의 영향을 받으며, 또한 거주인구와 체류인구의 경우 시간대별 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고려 필요	생활인구에 기반한 도시계획시설 등의 입지나 규모를 산정할 경우 계절 및 주말 등의 요인의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필요



구분		주요 이슈내용	비고
정책 활용	체류인구 체류시간	체류시간은 연속 체류시간이 아닌 총 체류시간으로 연속으로 3시간 체류한 사람과 1시간씩 3번 체류한 사람이 같은 체류인구로 산정	단순 통과인구도 체류인구로 산정 가능(1시간 * 3회 이동)
	생활인구의 공간단위 분석	생활인구는 시·군·구 단위로 산정으로 국토교통부가 생활인구를 활용한 생활권계획 수립 등의 도시정책에 활용하기에는 한계	기초지자체내 공간정책과 연계를 위해서는 도시내 적절한 공간범위 설정하여 산정
	생활인구의 유입 및 유출지역 분석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활인구의 유입 및 유출지역 특성이 중요하나 확인하기에는 한계	체류인구의 유입 및 유출지역 활용방안 모색 필요

## V. 결론

본 연구는 생활인구 관련 개념 및 정책 등의 분석을 통하여 향후 생활인구의 도시정책에서의 활용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인구는 기존 인구정책의 대안으로서 도시의 활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기존 주민등록인구로 대표되는 인구의 양적 개념의 한계를 생활인구의 도입으로 인구의 질적 개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인구, 체류인구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활성화의 영향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생활인구 중에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주민등록인구, 외국인인구, 체류인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가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앞의 분석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주민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의 비가 광역시도 간에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인구규모별로 보면 인구규모가 작을수록 주민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의 비중이 크게 산출되어 기초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생활인구의 증가가 반드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험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명확한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통근, 관광 등 지역의 체류인구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생활인구를 도시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인구의 등록인구 개념에서 ‘서비스인구’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구감소 시대의 효율적인 공간활용 및 수요에 기반한 시설재배치를 위해서는 UN 통계국에서 제시된 시간대별 인구, 즉 ‘서비스인구’가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단순한 주소지가 아닌 주변지역과의 연계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이용권의 개념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한 생활서비스 이용 및 관광 등 단순 방문에서 주기적인 또는 일정기간 체류 목적으로 전환되고, 이를 통한 정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 방문이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고향올래(GO鄕ALL來)사업’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생활인구의 도시정책 활용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이슈를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시범 산정지역 7곳 등의 생활인구 산정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경우 생활인구 산정의 비용절감 및 산출기간 단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자체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생활인구 또는 서비스인구를 산정할 수 있어 정책적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로는 통신빅데이터 및 행정안전부의 생활인구 산정방식은 기존 데이터 특성상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향후 행정안전부의 생활인구 산정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산정방식의 모니터링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구로의 확대적용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체류인구의 시간대별 체류시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분석이 가능하며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생활인구 관련 개념 및 정책분석을 통하여 향후 생활인구의 도시정책에서의 활용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인구는 기존 인구정책의 대안으로서 도시의 활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생활인구의 증가가 반드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명확한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통근, 관광 등 지역의 체류인구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생활인구를 도시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인구의 등록인구 개념에서 ‘서비스인구’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로는 통신 빅데이터 및 행정안전부의 생활인구 산정방식은 기존 데이터 특성상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향후 행정안전부의 생활인구 산정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산정방식의 모니터링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구로의 확대적용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1. 박경진·김상민(2017)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지역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하혜영·류영아(2022)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2013호”. 국회입법조사처.
3. 김동영·이중섭·송용호(2020) “전북 체류인구 활성화방안”. 전북연구원.
4. 신원득(2012) “수도권-지방간의 상생발전 전략”. 경기연구원.
5. 임화진(2022) “일본의 관계인구 정책과 청년이 주도하는 지방창생”. 「건축과 도시공간」 45: 32-39.
6. 전대욱·김필두·이대연(2021) “행정수요의 실질적 반영을 위한 새로운 인구개념 검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7. 안소현 외(2023) “인구감소시대의 체류인구 도입 필요성과 정책방안, 국토정책 Brief No.899(2023.1.9.)”. 국토연구원.
8. 이소영·김도형(2021) “작지만 강한 연결: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방안”. 2021 정책 이슈리포트.
9. 한국관광공사(2020) “관광빅데이터 분석 가이드라인 수립연구”.
10. 류영진(2020) “일본의 관계인구 개념의 등장가 의미, 그리고 비판적 검토”. 「지역사회학」 21(1): 5-30
11. 손수민·남진(2022)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주거지역 내 소비매출액 변화 및 영향요인 분석 - 코로나 19 전후를 중심으로”. 「도시부동산연구」 13(4): 131-159.
12. 최태림·최명섭(2021)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 성장분배모형의 인천광역시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정책연구」 12(1): 113-133.
13. 법제처 법률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 (2023년 11월 5일 검색)
14.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http://kosis.kr)) (2023년 11월 15일 검색)
15. 통신모바일 빅데이터로 본 유동인구 지도서비스([giraf.sktelecom.com/web/kostat](http://giraf.sktelecom.com/web/kostat)) (2023년 11월 15일 검색)
16. 指出一正(2016) “ぼくらは地方で幸せを見つける(ソトコト流ローカル再生論)”.
17. 国土交通省 国土政策局総合計画課(2021) “関係人口の実態把握”.
18. 일본 총무성([soumu.go.jp](http://soumu.go.jp)) (2023년 5월 12일 검색)

논문접수: 2023.11.27

1차심사완료: 2023.12.10

게재확정: 2023.12.13